

【 13 】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제출연월일 : 1998. 11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□ 폐지이유

- '96년 7월 8일에 제정된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장기발전계획수립 완료시까지 운영하는 한시 조례로서 양주군 장기 발전계획 최종 보고서를 '98.7.26일에 작성 완료하였고, 동 자문위원회의 최종 회의를 '98.10.30일에 마침으로써 동 조례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동 조례를 폐지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양주군장기 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[1996. 7. 8]
[조례 제1574호]

제 1 조(목적) 21세기에 대비한 양주군의 장기 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양주군장기 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제 2 조(기능) 위원회는 군의 장기 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제 3 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제 4 조(임원) ①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둔다.
②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 5 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여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제 7 조(분과위원회)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8 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.

제 9 조(관계기관의 협조)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10조(의회보고)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군의회의 의견을 장기 발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중간보고회를 갖고 최종안을 군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 11조(수당등) 위원회(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편 기획감사 제2장 자치경영 양주군 장기 발전 계획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2조(운영규칙)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1996. 7. 8 초례 제157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양주군장기발전기본계획수립 완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

□ 폐지이유

'96년 7월 8일에 제정된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장기발전계획수립완료시까지 운영하는 한시조례로서 양주군장기발전계획 최종 보고서를 '98.7.26일에 작성완료하였고, 동 자문위원회의 최종회의를 '98.10.30일에 마침으로써 동조례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□ 폐지조례(안) : 따로 붙임